

여성차별철폐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정부 보고 심사  
(2016 년 2 월 16 일, 제네바)  
(질의응답 부분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 개요)

16 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 7 회 및 제 8 회 정부 보고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응답 부분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 발언개요.

1. 여성차별철폐조약의 국내적용

(블룬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 98 조 제 2 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위안부문제

(호프마이스터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도 답변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일한간에 위안부문제가 정치·외교문제화된 1990 년대 초반 이후 위안부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었다’ 는 견해가 널리 유포된 원인은 고인이 된 요시다 세이지씨가 1983 년 ‘나의 전쟁범죄’ 라는 책에서 요시다 세이지씨 스스로가 ‘일본군의 명령으로 한국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잡아갔다’ 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시 대형 신문사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이 사실처럼 크게 보도하여 일본, 한국의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해당 도서의 내용은 후에 복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완전히 상상의 산물이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 증거로 아사히신문도 2014 년 8 월 5 일 및 6 일을 포함, 이후 9 월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게재하여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이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죄했다.

또한 ‘20 만명’ 이라는 숫자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이다. 아사히신문은 2014 년 8 월 5 일자 기사에서 ‘“여자정신대” 란 전시하에서 일본 본토 및 구 식민지인 조선·대만에서 여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 를 의미한다. (중략) 목적은 노동력의 이용이며 장병의 성상대를 해야 했던 위안부와는 별개이다’ 라고 하면서 ‘20 만명’ 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통상 전시 노동에 동원된 여자정신대와 여기서 말하는 위안부를 잘못 혼동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성노예’ 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일한 양국 정부간에는 위안부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왔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일한외상회담이 개최되어 일한 외상간에서 본건은 타결되었으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동일 그 후 일한 정상이 전화회담을 갖고 양 정상은 이러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평가했다.

모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때의 일한 합의를 나타내는 자료는 서면의 답변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그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서 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의 예산, 10억엔정도이나 자금을 일괄 출연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한 양국 정부는 각각 합의 내용을 성실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점은 현 시점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일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받을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참고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일한양국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자 한다. 호프마이스터 위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들었다. 지난 세계대전에 관한 배상 그리고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을 포함하여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의 사이에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양국간 조약 등, 이것은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도 포함되며 일본·중국의 처리 방식도 포함되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법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으나 성실하게 대응해 왔으며,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시키고 일본의 예산 출연과 일반국민들의 모금으로 일정한 활동을 펼쳤다.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으나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조우 주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년 12 월 28 일, 기시다 대신과 윤 외교부 장관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은 답변 첨부를 보면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역사를 부정한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강제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으나, 이 기시다 대신의 합의 안에는, 위안부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그리고 액수는 10 억엔정도이나 일본 예산 조치로 재단을 설립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에 그 이상을 말씀드리지 않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라는 것은,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는 점,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이를 담당했다는 것은 이전부터 인정했던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점과 함께 예를 들어 ‘20 만명’ 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 그 신문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성노예’ 라는 표현도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서면 답변에 첨부한 양국 외상의 공동발표 문서 안에도 ‘성노예’ 라는 말은 한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매우 안타깝게도, 조우주사의 지적은 어떤 면에서도 일본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반하는 것을 발언하셨다고 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유감스럽지만 명확하게 발언하고자 한다.

(조우주사의 일한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 나눠드린 합의, 이것은 일한간의 합의이며 현재 이것을 일한 양국 정부는 각각 성실하게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일한간의 합의에 대해서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